|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查)조례**  (1997년 1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09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 2016년 6월 19일 <국무원령 제670호><<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查)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세관 조사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고 세관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정상적인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조세수입을 보장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세관 조사라 함은 세관이 수출입화물 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또는 보세화물•세금감면화물의 세관 감독관리기한 내와 그 이후의 3년 내에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의 회계장부, 회계증빙, 통관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이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로 통칭)와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의 수출입 활동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감독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세관은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조직에 대하여 세관 조사를 실시한다.  (1)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조직;  (2) 대외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3) 보세업무를 경영하는 기업;  (4) 세금감면수출입화물을 사용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조직;  (5) 통관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6) 해관총서가 규정한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타 기업•조직.  제4조 세관은 조사업무의 수요에 따라 관련 업계협회, 정부부서와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특정 상품, 업계와 수출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정보가 상업비밀과 연관된 경우 세관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세관과 세관의 담당인력은 세관 조사직무을 이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實事求是), 청렴봉공(廉潔奉公)하여고 하고 조사 대상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의 관리  제6조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이 비치, 작성한 회계장부, 회계증빙, 재무제표 및 기타 회계자료는 수출입 업무의 관련 상황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온전하게 기록 및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보관기한에 따라 회계장부, 회계증빙, 재무제표 및 기타 회계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통관서류, 수출입서류, 계약서 및 수출입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타 자료는 이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이 회계제도를 완비하였고 컴퓨터를 통해 정확하고 온전하게 기장, 회계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컴퓨터에 저장되었거나 컴퓨터에서 출력한 회계기록은 회계자료로 간주한다.  제3장 세관 조사의 실시  제9조 세관은 세관 감독관리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의 수출입 신용 상황, 리스크 상황 및 수출입화물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세관 조사의 중점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관은 조사를 실시하기 3일 전에 서면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에게 중대한 법위반 혐의가 있어 그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와 수출입화물이 이동, 은닉, 훼기될 가능성이 있는 등 긴급한 상황하에서 직속 세관 세관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예속 세관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세관은 조사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세관은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팀은 적어도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2조 조사 진행 시 세관의 담당인력은 세관조사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세관조사증명서는 해관총서가 통일적으로 제작 및 발급한다.  제13조 조사 진행 시 세관의 담당인력이 조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 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 세관은 조사 진행 시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자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2) 조사 대상자의 생산경영장소, 화물보관장소를 방문하여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생산경영 상황과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조사 대상자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와 기타 관련 인력에게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상황 및 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4) 직속 세관 세관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예속 세관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 대상자가 상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서 개설한 예치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제15조 세관은 조사 진행 시 조사 대상자가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이동, 은닉, 변조, 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속 세관 세관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예속 세관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와 관련 전자 데이터 저장 매개물에 대하여 차압,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조치를 취함에 있어 조사 대상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세관은 관련 상황에 대한 조사가 끝나거나 증거 수집이 끝난 후 즉시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와 관련 전자 데이터 저장 매개물에 대한 차압, 압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수출입화물이 세관법과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속 세관 세관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예속 세관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출입화물에 대한 차압,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 대상자는 세관의 조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 대상자는 세관의 조사를 수락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정황을 반영하고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절, 지연,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 대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장하는 경우 기장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세관이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의 생산경영장소, 화물보관장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표가 현장에 있어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장부를 점검하고 화물보관 장소를 공개하며 화물을 이동하거나 화물 포장을 열어야 한다.  제20조 세관이 조사 진행 시 조사 대상자와 재무거래 또는 기타 상업거래가 있는 기업•조직은 성실하게 세관에 조사 대상자의 관련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와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세관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계, 세무 등 분야의 전문기구에 의뢰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회계, 세무 등 분야의 전문기구에 의뢰하여 도출한 전문적 결론은 세관 조사의 참고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22조 세관 조사팀은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조사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기에 앞서 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그의 서면 의견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세관은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 결론을 내리고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세관은 조사 결론에서 해당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세관 조사의 처리  제24조 세관 조사에서 관세 또는 기타 수입단계의 세금이 적게 부과되었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조세 징수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세금을 보충 징수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조세 징수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가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세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차압, 압류 조치가 취해진 해당 수출입화물이 세관의 조사에서 법위반 혐의가 배제된 경우 세관은 즉시 차압, 압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세관의 조사에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관이 세관법과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세관의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가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관이 세관법과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이 자발적으로 그의 해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해관의 처리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하여야 한다.  제27조 세관의 조사에서 발견된 조사 대상자의 밀수 행위가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이 세관법과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세관이 조사를 통하여 보충징수 또는 추징하기로 결정한 세금, 몰수한 밀수 화물과 불법소득 및 부과한 과징금은 전부 국고에 귀속된다.  제29조 조사 대상자와 세관 사이에 납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세관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0조 조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세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그의 세관신고 등록•등기를 취소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세관에 허위 정황을 제공하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2) 세관에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와 관련 전자 데이터 매개물의 제공을 거절, 지연한 경우;  (3) 관련 통관서류, 수출입서류, 계약서, 수출입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타 자료와 관련 전자 데이터 매개물을 이동, 은닉, 변조, 훼기한 경우.  제31조 조사 대상자가 규정에 따라 통관서류, 수출입서류, 계약서 및 수출입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타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그의 세관신고 등록•등기를 취소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2조 조사 대상자가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를 이동, 은닉, 변조, 훼기한 경우 회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묻는다.  제33조 세관의 담당인력이 조사 중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로부터 재물을 취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재물을 요구한 행위가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제6장 부칙  제34조 이 조례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  　　（1997年1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09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6月19日<国务院令第670号>《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建立、健全海关稽查制度，加强海关监督管理，维护正常的进出口秩序和当事人的合法权益，保障国家税收收入，促进对外贸易的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所称海关稽查，是指海关自进出口货物放行之日起3年内或者在保税货物、减免税进口货物的海关监管期限内及其后的3年内，对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的会计账簿、会计凭证、报关单证以及其他有关资料（以下统称账簿、单证等有关资料）和有关进出口货物进行核查，监督其进出口活动的真实性和合法性。  第三条　海关对下列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实施海关稽查：  （一）从事对外贸易的企业、单位；  （二）从事对外加工贸易的企业；  （三）经营保税业务的企业；  （四）使用或者经营减免税进口货物的企业、单位；  （五）从事报关业务的企业；  （六）海关总署规定的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其他企业、单位。  第四条　海关根据稽查工作需要，可以向有关行业协会、政府部门和相关企业等收集特定商品、行业与进出口活动有关的信息。收集的信息涉及商业秘密的，海关应当予以保密。  第五条　海关和海关工作人员执行海关稽查职务，应当客观公正，实事求是，廉洁奉公，保守被稽查人的商业秘密，不得侵犯被稽查人的合法权益。  第二章　账簿、单证等有关资料的管理  　　第六条　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所设置、编制的会计账簿、会计凭证、会计报表和其他会计资料，应当真实、准确、完整地记录和反映进出口业务的有关情况。  第七条　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保管期限，保管会计账簿、会计凭证、会计报表和其他会计资料。  报关单证、进出口单证、合同以及与进出口业务直接有关的其他资料，应当在本条例第二条规定的期限内保管。  第八条　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会计制度健全，能够通过计算机正确、完整地记账、核算的，其计算机储存和输出的会计记录视同会计资料。  第三章　海关稽查的实施  第九条　海关应当按照海关监管的要求，根据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的进出口信用状况和风险状况以及进出口货物的具体情况，确定海关稽查重点。  第十条　海关进行稽查时，应当在实施稽查的3日前，书面通知被稽查人。在被稽查人有重大违法嫌疑，其账簿、单证等有关资料以及进出口货物可能被转移、隐匿、毁弃等紧急情况下，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海关可以不经事先通知进行稽查。  第十一条　海关进行稽查时，应当组成稽查组。稽查组的组成人员不得少于2人。  第十二条　海关进行稽查时，海关工作人员应当出示海关稽查证。  海关稽查证，由海关总署统一制发。  第十三条　海关进行稽查时，海关工作人员与被稽查人有直接利害关系的，应当回避。  第十四条　海关进行稽查时，可以行使下列职权：  （一）查阅、复制被稽查人的账簿、单证等有关资料；  （二）进入被稽查人的生产经营场所、货物存放场所，检查与进出口活动有关的生产经营情况和货物；  （三）询问被稽查人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员和其他有关人员与进出口活动有关的情况和问题；  （四）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查询被稽查人在商业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存款账户。  第十五条　海关进行稽查时，发现被稽查人有可能转移、隐匿、篡改、毁弃账簿、单证等有关资料的，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查封、扣押其账簿、单证等有关资料以及相关电子数据存储介质。采取该项措施时，不得妨碍被稽查人正常的生产经营活动。  海关对有关情况查明或者取证后，应当立即解除对账簿、单证等有关资料以及相关电子数据存储介质的查封、扣押。  第十六条　海关进行稽查时，发现被稽查人的进出口货物有违反海关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嫌疑的，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查封、扣押有关进出口货物。  第十七条　被稽查人应当配合海关稽查工作，并提供必要的工作条件。  第十八条　被稽查人应当接受海关稽查，如实反映情况，提供账簿、单证等有关资料，不得拒绝、拖延、隐瞒。  被稽查人使用计算机记账的，应当向海关提供记账软件、使用说明书及有关资料。  第十九条　海关查阅、复制被稽查人的账簿、单证等有关资料或者进入被稽查人的生产经营场所、货物存放场所检查时，被稽查人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员或者其指定的代表应当到场，并按照海关的要求清点账簿、打开货物存放场所、搬移货物或者开启货物包装。  第二十条　海关进行稽查时，与被稽查人有财务往来或者其他商务往来的企业、单位应当向海关如实反映被稽查人的有关情况，提供有关资料和证明材料。  第二十一条　海关进行稽查时，可以委托会计、税务等方面的专业机构就相关问题作出专业结论。  被稽查人委托会计、税务等方面的专业机构作出的专业结论，可以作为海关稽查的参考依据。  第二十二条　海关稽查组实施稽查后，应当向海关报送稽查报告。稽查报告认定被稽查人涉嫌违法的，在报送海关前应当就稽查报告认定的事实征求被稽查人的意见，被稽查人应当自收到相关材料之日起7日内，将其书面意见送交海关。  第二十三条　海关应当自收到稽查报告之日起30日内，作出海关稽查结论并送达被稽查人。  海关应当在稽查结论中说明作出结论的理由，并告知被稽查人的权利。  第四章　海关稽查的处理  第二十四条　经海关稽查，发现关税或者其他进口环节的税收少征或者漏征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有关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被稽查人补征；因被稽查人违反规定而造成少征或者漏征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有关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追征。  被稽查人在海关规定的期限内仍未缴纳税款的，海关可以依照海关法第六十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采取强制执行措施。  第二十五条　依照本条例第十六条的规定查封、扣押的有关进出口货物，经海关稽查排除违法嫌疑的，海关应当立即解除查封、扣押；经海关稽查认定违法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规定处理。  第二十六条　经海关稽查，认定被稽查人有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规定处理。  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主动向海关报告其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并接受海关处理的，应当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  第二十七条　经海关稽查，发现被稽查人有走私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规定处理。  第二十八条　海关通过稽查决定补征或者追征的税款、没收的走私货物和违法所得以及收缴的罚款，全部上缴国库。  第二十九条　被稽查人同海关发生纳税争议的，依照海关法第六十四条的规定办理。  第五章　法律责任  第三十条　被稽查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海关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其报关注册登记；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向海关提供虚假情况或者隐瞒重要事实；  （二）拒绝、拖延向海关提供账簿、单证等有关资料以及相关电子数据存储介质；  （三）转移、隐匿、篡改、毁弃报关单证、进出口单证、合同、与进出口业务直接有关的其他资料以及相关电子数据存储介质。  第三十一条　被稽查人未按照规定编制或者保管报关单证、进出口单证、合同以及与进出口业务直接有关的其他资料的，由海关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其报关注册登记；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第三十二条　被稽查人未按照规定设置或者编制账簿，或者转移、隐匿、篡改、毁弃账簿的，依照会计法的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  第三十三条　海关工作人员在稽查中玩忽职守、徇私舞弊、滥用职权，或者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索取被稽查人的财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第六章　附　则  第三十四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